귀속 연도 2023 년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대・외국인 내국인   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가주지국 지국 지국 기주지국 지국 지국																		
(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 □ □ □ □ □ □ □ □ □ □ □ □ □ □ □ □ □																		
지 스		①사업자등록번호			220-87-66780 ②법인명 또는 상호					호	나인원소프트(주) ③성명 오***					r		
징 <del>:</del> 의무	ᢥ	④주민(법인)등 <del>록</del> 번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1 1							
소득자		⑥상 호			①시업.						자등록번호							
		⑧사업장소재지																
		9성 명			김***					⑩주민등록번호			910114-*****					
		⑪주 소																
①업종 구분		940909		※ 작성방법 참조														
①37		급	⑪소득	귀속			÷ 011	<b>○</b>		원 천			징 수 서		액			
연	월	일	연	월	15지 급 총 액		<u> </u>	⑯세율	⑪소 득 세			18지방소득세			⑩계			
2023			2023			40,000,	000	3	-	1,2		1		20,000	1,32		1,320,0	)00
																		$\dashv$
																		$\dashv$
																		$\dashv$
																		_
																		$\dashv$
																		$\dashv$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2024 년 05 월 02 일 징수(보고)의무자 나인원소프트(주) (서명 또는 인)																		
세	<b>세 무 서 장</b> 귀하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비거주자는 별지 제23호서식(5)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2. 징수의무자란의 ④주민(법인)등록번호은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 3. 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⑪·⑱·⑲란에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 4. ⑫업종구분란에는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종구분코드를 적어야 합니다.

종목	업종 코드	종목	업종 코드	종목	업종 코드	종목	업종 코드	종목	업종 코드
저술가	940100	연예보조	940500	음료배달	940907	목욕관리사	940915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940922
화가관련	940200	자문・고문	940600	방문판매원	940908	행사도우미	940916	대출모집인	940923
작곡가	940301	바둑기사	940901	기타자영업	940909	심부름용역	940917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940924
배우	940302	꽃꽃이교사	940902	다단계판매	940910	퀵서비스	940918	방과후강사	940925
모델	940303	학원강사	940903	기타 모집수당	940911	물품배달	940919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940926
가수	940304	직업운동가	940904	간병인	940912	병의원	851101	관광통역 안내사	940927
성악가	940305	봉사료 수취자	940905	대리운전	940913	학습지 방문강사	940920	어린이통학 버스기사	940928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940306	보험설계	940906	캐디	940914	교육교구 방문강사	940921	중고자동차 판매원	940929

기타자영업 코드(940909)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않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위 표에서 기타자영업을 제외한 39개 업종코드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지 않는 업종(예: 컴퓨터 프로그래머(소프트웨어프리랜서(940926) 제외), 전기·가스검침원 등)인 경우 적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예: 식당주방보조원, 시간제 편의점근무자, 건설노동자등)는 기재대상이 아닙니다.

5. ① 세율란에는 3%를 적습니다. 다만, 직업운동가(940904)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0%, 봉사료 수취자(940905)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의2에 해당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은 5%를 적습니다.